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이 법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달빛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실시계획·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달빛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달빛철도 역세권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II. 검토의견

1.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안 제11조조)

제정안 제11조는 달빛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 또는 협의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협의 요청 후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인허가의제의 절차, 기준, 효과,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상기 사항을 규정(2023년 3월 시행)¹⁾하고 있는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중복되는 내

-
- 1) 「**행정기본법**」 제24조(인허가의제의 기준) ① 이 절에서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하 “주된 인허가”라 한다)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②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제5항 단서에 따른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내에 협의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해당 법령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제25조(인허가의제의 효과) ① 제24조제3항·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제26조(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 등) ①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5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의제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용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되, 다른 내용(행정기본법은 관계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20일로 규정한 반면, 동 제정안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0일로 규정)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안 제11조에 대한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4.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협의·승인·허가·인가·동의·해제·결정·신고·지정·면허·심의·처분·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 24. (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20일”은 “30일”로 본다.

제 정 안	수 정 의 건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삭 제>

다만, 기획재정부는 제정안 제7조와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통일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개별법이 아닌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 특별법을 통한 예비타당성 조사 우회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는 점, 다른 지역 또는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 근거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